

제214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
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9. 6. 19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117호로 2019년 6월 5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
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다양한 노인복지 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해 기금 재원의 조성방법
및 사용 용도를 확대함으로써 노인복지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기금의 재원을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기탁한
성금으로 확대(안 제3조 제3호)
- 나.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조문 정비(안 제4조 제1항 제6호)
- 다. 「노인복지법」 제36조에 규정된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및
개·보수를 위한 기금의 용도 신설(안 제4조 제1항 제7호)
- 라. 기금의 관리·운용 범위를 기존 해당연도 이자수입 범위에서
적립금 및 해당연도 이자수입으로 개정(안 제5조 제4항)

- 마.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(정책결정과정 참여)에 의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단서 신설(안 제6조 제2항)
- 바.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6조의2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- 다. 협의사항
 - 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 - 2) 부패영향평가: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 규정 신설 권고가 있어 반영
 - 3) 인권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: 원안동의
- 라. 입법예고(2019.4.25. ~ 2019.5.15. 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건은 노인복지기금 재원의 조성방법 및 사용 용도를 확대함으로써 노인복지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- 주요 내용은
 - 안 제3조제3호에 기금의 재원 마련 규정을 추가 신설하였고
 - 안 제4조제1항제7호에 기금의 용도를 추가 신설하였으며
 - 안 제5조제4항에서는 기금 지원금의 범위를 확대하였음.

- 본 조례안은 우리구 거주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운용 중인 노인복지기금이 낮은 공공예금 이자율로 인해 기금 운용에 한계가 있어, 기금의 재원 마련 방법을 추가하고 관리·운용 범위도 기존의 이자수입 범위에서 적립금 및 이자수입으로 확대하여 기금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. 또한, 기금 용도에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및 개·보수를 추가하여 노인복지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고령인구 증가 등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참 고 자 료

1 노인복지법

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5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·운용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·유동성·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